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2구합74790 등록면허세 등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
원 고	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송○○, 최○○, 신○○
피 고	○○도 ○○군수
변 론 종 결	2023. 5. 11.
판 결 선 고	2023. 6. 2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21. 3. 8.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등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B은 2020. 7. 16. 설립중의 회사인 상태에 있던 원고에게 ○○ ○○구 C 대지 474.1㎡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을 180억 원으로 정하였다(이하 '이 사건 현물출자계약'이라 한다).

나. B은 2020. 7. 30.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인설립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86,400,00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등록면허세'라 한다). 그 후 자본금의 총액을 현물출자가액인 180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법인설립등기가 2020. 8. 4. 마쳐졌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는데, ○○ ○○구청장은 2020. 8. 31.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을 하였다.

라. 원고는 2021. 2. 16.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면허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피고는 2021. 3. 8. 이미 원고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졌고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거부처분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조세심판원은 2022. 5. 18. 조심 D 사건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, 3, 4호증, 갑 제5호증의 1, 2,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3, 갑 제6 내지 10호증, 을 제1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1) 토지거래허가 대상 계약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으므로, 위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'납입한 출자금액'이라고 볼 수는 없다.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된 경우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진 때로 보아야 하므로, 그에 대한 과세권도 그 무렵 발생한다.

2) 원고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었으나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,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.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출자되었다고 볼 수 없다.

3) 원고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출자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출자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, 피고의 과세권이 발생하지 않았다.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,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'관계 법령' 기재와 같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다.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

1)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·이전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(등재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었다. 지방세법은 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.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본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'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'으로 정의하고, 그 단서에서 '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'을 제외하고 있다.

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·이전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,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·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(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). 앞서 본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, 구 지방세법과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,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. 따라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서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,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·무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,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(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98두13492 판결,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1두9776 판결, 수원지방법원 2001. 5. 9. 선고 2000구2518 판결 등을 들고 있으나, 위 판결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).

2) 살피건대, B이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고, 자본금의 총액을 현물출자가액인 180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법인설립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설령 위 법인설립등기 신청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거나, 그 후 ○○ ○○구청장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, 그러한 사유는 이미 마쳐진 원고의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○○

판사 이○○

판사 이○○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세기본법

제34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

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.

2. 등록면허세

가.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: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

■ 지방세법

제23조(정의)

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등록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.

가. 광업권·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

나.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(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)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

다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

라.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

제27조(과세표준)

① 부동산, 선박, 항공기,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“등록면허세”라 한다)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

제28조(세율)

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.

6. 법인 등기

가. 상사회사,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

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. 비실명처리일자 : 2023-09-22

1) 설립과 납입: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(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.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)

■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24조(납세의무자)

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·이전·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(登載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. 끝.